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65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5.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03.



마음으로 읽는 타로

정보공개서

[(주)아인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

(주)아인컴퍼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상신하길로 298번길 7-23 KT 시네마 2, 2층 201호
가맹본부의 대표 전화번호	1661 - 755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아인컴퍼니	마음으로읽는타로	경기도 화성시 상신하길로 298번길 7-23 KT 시네마 2, 2층 20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4. 1. 25.	2019. 7. 1.	우수연	1661 -7552	-
	법인등록번호	134811-0783044	사업자등록번호	572-87-0330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우수연/(주)아인컴퍼니	마음으로읽는타로	경기도 화성시 상신하길로 298번길 7-23 KT 시네마 2, 2층 2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우수연	1661 - 7552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마음으로읽는타로]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설명
명 칭	마음으로읽는타로	인공지능AI를 활용하고 키오스크를 통하여 타로 및 사주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상 호	마음으로읽는타로 OO점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명, 입점하는 건물명 또는 가맹점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가맹점명칭을 부여합니다.
상표(서비스표)	마음으로읽는타로	2024.03.11. 출원 출원번호 4020240043879
그 밖의 영업표지		-
	마타로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	-	-	10,000	-	-
2022년	-	-	-	12,321	-	-
2023년	-	-	-	3,566	-	-

※ 당사는 2019년 7월 1일 개인사업자 등록 후 현재 폐업을 하지 않고 2024년 1월 25일 동일업종 법인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바로 전 3년 동안의 매출액은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당사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관련 매출액은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우수연	사내이사	2019. 7. 1. ~ 현재	사내이사	회사 대표, 총괄업무

※ 당사는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을 운영한 이력을 기준으로 사업기간을 기재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마음으로읽는타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마음으로읽는타로 (상표권)	마음으로읽는타로	2024.03.11. 출원	출원번호 4020240043879	우수연	
마타로 (상표권)	마타로	출원준비중		(주)아인컴퍼니	
타로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무인 장치 및 이를 이용한 타로 서비스 제공 방법 (특허권)	무인 장치를 이용한 서비스	2023.11.16.	등록번호 10-2604448-00-00	(주)아인컴퍼니	
알림 시스템 (특허권)	무인 장치를 이용한 서비스	2022.06.03.	등록번호 10-2406830-00-00	(주)아인컴퍼니	
피엘씨 변수의 메모리 할당 방법 (특허권)	무인 장치를 이용한 서비스	2021.03.19.	등록번호 10-2231963-00-00	(주)아인컴퍼니	

◆ 사용권자 주식회사 아인컴퍼니는 상표권자 우수연에게 상표권 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상표는 출원신청 중에 있으며, 등록되기 전까지는 당사의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II. 가맹본부의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사업 현황

1.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가맹사업예정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9년 7월 1일)

※ 현재 법인의 임원인 대표가 2019.7.1. 개인사업을 시작으로 운영하였고, 2024년 1월 25일 동 일업종의 법인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4년 3월 20일 개인사업자를 (주)아인컴퍼니로 포괄양수도 하였습니다.

2. [마음으로읽는타로]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아인 컴퍼니	마음으로읽는 타로	우수연	가맹사업예정	경기도 화성시 상신하길로 298번길 7-23 KT 시네마 2, 2층 201호

3. [마음으로읽는타로] 업종

영업표지	업종	
마음으로읽는타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 서비스	타로서비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	1	1	-	1	1	-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	1	1	-	1	1	-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2024년 3월 20일 개인사업자를 (주)아인컴퍼니로 포괄양수도 하였습니다.

5. 바로 전 3년간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해당사항없음					
2022						
2023						

6. [마음으로읽는타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마음으로읽는타로]외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마음으로읽는타로] 브랜드는 2024년 가맹사업 시작 예정으로 바로 전 사업연도에는 가맹점이 없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8. [마음으로읽는타로]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0	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마음으로읽는타로]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우리은행	화성 발안지점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28	031-352-7535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주)우리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주)우리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아인컴퍼니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주)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4,400	-	-	-
가입비	3,300	계약체결 동시 예치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 계약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교육비	1,100	계약체결 동시 예치	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비용

2) 계약이행보증금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과 동시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 (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불가 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합계	7,400
가입비	3,300 (부가세포함)
교육비	1,100 (부가세포함)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없음)

4) 기타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단독 매장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기준면적 : 39.6㎡ /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39.6㎡당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104,400	8,700	-	-	-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협력업체	26,400	2,200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39.6㎡(12평) 기준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협력업체	7,000	-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39.6㎡(12평) 기준
윈도우쇼룸	협력업체 협력업체	3,000	-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39.6㎡(12평) 기준
은하수천장	협력업체 협력업체	4,800	별도산정	33㎡ 기준 400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점포상황 및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다름
빔프로젝트	협력업체 협력업체	3,600	별도산정	33㎡ 기준 300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키오스크	협력업체 협력업체	66,000	33,000 (1대당)	물품 공급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키오스크 36개월 렌탈 계약 또는 구매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2,000	-	물품 공급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66㎡(20평)동일

② 샵인샵매장 기준

샵인샵매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타 사업자의 매장에 [마음으로읽는타로]가 입점하여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샵인샵매장은 매장상황에 따라 1) 매장 내 특정 공간에 벽체, 천장, 입구 등을 인테리어 하는 방법 및 2)개별 부스만 설치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기기2대)	부스개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1) 기존 점포내 내장공사로 입점하는 경우						
총계	-	최소 72,400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협력업체	4,400	2,200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기기2대기준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별도산정	별도산정	계약시 50%	공사 전	

	협력업체			오픈전일 50%	계약취소	
윈도우쇼룸	협력업체 협력업체	별도산정	별도산정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선택.
은하수천장	협력업체 협력업체	별도산정	㎡기준 400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상황 및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다름
빔프로젝트	협력업체 협력업체	별도산정	㎡기준 300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키오스크	협력업체 협력업체	66,000	33,000 (1대당)	물품 공급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키오스크 36개월 렌탈 계약 또는 구매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2,000	-	물품 공급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2) 개별 부스만 설치하는 방법						
총계	-	84,000		-	-	-
인테리어 (개별부스)	협력업체 협력업체	16,000	8,000			은하수천장 포함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협력업체	-	-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현장상황에 따라 비용상이
윈도우쇼룸	협력업체 협력업체	-	-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매장상황에 따라 선택.
키오스크	협력업체 협력업체	66,000	33,000 (1대당)	물품 공급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키오스크 36개월 렌탈 계약 또는 구매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2,000	-	물품 공급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③ 이동식 행사장 상설점포(부스) 및 개별부스

- * 이동식행사장에 상설점포(부스)를 설치하고 임시로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이하 “이동식가맹점사업자”라 한다.)
- * 이동식 행사장 상설점포(부스)는 컨퍼런스, 스포츠대회, 기업행사, 지역·거리·대학축제등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마음으로읽는타로]부스를 말합니다.
- * 개별부스는 단독매장이나 샵인샵매장 형태로 운영할 수 없는 공간 (예: 소규모 매장, 복도, 푸드코트 등 이와 유사한 곳 일체)에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마음으로읽는타로]부스를 말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부스개)	부스개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43,000		-	-	-
인테리어 (점포내장공사)	협력업체 협력업체	8,000	8,000	계약시 50% 오픈전일 50%	공사 전 계약취소	
키오스크	협력업체 협력업체	33,000	33,000	물품 공급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키오스크 36개월 렌탈 계약 또는 구매
초도물품비	가맹본부	2,000	-	물품 공급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 키오스크는 **삽입삽 및 단독매장(39.6㎡ ~ 66㎡)** 2대 이상을 사용해야하며, 기기당 3300만원(부가세별도)에서 기기값으로 300만원(부가세별도)은 선지급하며, 나머지 금액 3,000만원(부가세별도)은 36개월 렌탈계약으로 매월 협력업체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입가능: 기기당 3300만원(부가세별도)]

※ 키오스크 렌탈기간 만료 후에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소방시설, 음향기기, 전기증설,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 공사비용,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개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초도물품비(개점행사비, 관리비, 물품비, 배너, 포스터, 전단지, 마케팅비용등) 는 가맹점별 점포 규모가 상이하므로 점포 상황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협의 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귀하는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가맹사업 전체의 동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간판 등의 설비는 당사가 정한 시공매뉴얼을 준수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당사가 정한 시공매뉴얼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당사의 노하우가 담긴 시공매뉴얼 보호를 위하여 도면설계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 및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실측 및 도면설계 제공비 **금삼백만원[₩3,000,000원(부가세포함)]**과 공사감리비용으로 **1부스 및 3.3㎡ 당 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포함)]**을 시공 시작 전일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인테리어 및 간판 등을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시공하는 경우, 도면설계 및 관리 감독 비용은 면제됩니다.

※ 키오스크 및 관리프로그램 구입기준

당사가 전국 가맹점 유지를 위해 필수로 정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정한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식가맹사업자, 개별부스, 샵인샵 점포는 최소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가맹상담 →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영업지역 파악 → 가맹본부동의 → 입지 확정	최소 점포 기준 39.6㎡ 이상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¹⁾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8.8%	매달말일	반환불가	영업표지사용비, 모든 서버비 및 업그레이드비용	부가세포함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1) 공동판촉시 기획비용은 본사 부담,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2) 개별판촉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부담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50%(각 가맹점사업자간에는 균등부담)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3일 전	공사 전 계약취소	취소기한 경과	Ⅶ.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키오스크	협력업체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36개월 렌탈 또는 구매
화재보험	보험회사	실비	지정일	미반환	실사용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실비	간판 변경 후 3일 이내	간판 제작 개시 전	취소기한 경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귀하의 귀책사유 발생시 비용산정	교체보수 전 5일 이내	시공 후 반환불가	교체 보수 비용소요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연체일 약일부터 지급일까지			본사에 지급할 비용을 연체했을 경우 부담

1)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 구입시 기기당 업그레이드 실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를 기재하는 것”으로 당사는 2023년도에 가맹사업을 하지 않아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담당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필요시	당사의 임직원
위생관리	위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매장과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필요시	당사의 임직원
시설관리	BI적용 및 낙후 시설 개선 요구의 권리	필요시	당사의 임직원

※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추가 발생비용은 없습니다. 단, 갱신 및 재계약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치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가맹본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마음으로읽는타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금일백십만원(₩1,100,000원,부가세포함) 및 계약이행보증금 금삼백만원(₩3,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달리,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계약기간 대신 새로운 가맹계약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과 절차는 신규계약과 동일한 가맹비, 보증금 등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일정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마음으로읽는타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공급가격의 상·하한을 알 수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마음으로읽는타로]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타로, 사주 키오스크 프로그램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및 상품 일체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상품·용역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별첨2]와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2]			

- ※ 판매하는 상품·용역은 2024년 5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별첨2]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
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타로, 사주, 관상 등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	마음으로읽는타로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1km (네이버지도- 거리재기 기준이며 특수상권은 별도상권으로 구분) (이동식가맹점사업자의 영업기간 동안에는 별도 상권으로 구분)	가맹계약서 별첨[1]에 영업지역 표시

※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영업지역이 특수상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공간만 귀하의 영업지역에 해당하며 이를 벗어나는 곳은 영업 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 당사가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동식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인 영업지역을 보호받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이동식가맹점사업자가 상설점포(부스)를 임시로 운영 할 경우, 해당 행사기간동안의 해당 행사장과 중복되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행사장 자체를 찾아오는 일시적인 유동인구로 매출이 발생하므로** 별도상권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상설점포 임시운영으로 귀하의 경영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이동식가맹점사업자 및 귀하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마음으로읽는타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0%	100%	0%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	-

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1항각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마음으로읽는타로]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39조 1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물품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 3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월평균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의 장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9조 4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다.	제39조 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

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 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제39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 2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9조 2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2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9조 2항 6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9조 2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9조 2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2항 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양도인/양수인 면담 →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	-----------	-------	----	---------

상속	상속 후 3개월 내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본부에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 → 대리행사 여부 통지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신청 → 가맹본부 담당팀 검토 → 업무위탁 여부 통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 지역 내에서 귀하가 [마음으로읽는타로]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 시설 내에서 [마음으로읽는타로] 이외의 영업 활동 및 사업체 운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타로, 사주, 관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마음으로읽는타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AM 6시 ~ 익일 AM 1 개장 의무	365일 영업	24시간 영업을 권장 아침6시-익일 오전1시를 제외한 시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영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식가맹점사업자, 샵인샵매장, 개별부스는 위 영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각 행사장 운영시간 및 주점포운영시간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샵인샵 점포, 개별부스의 경우 주점포 및 입점장소가 영업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읽는타로]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판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분기별 1회, 필요시 증감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기기사용	담당자 매장방문 → 기기사용상태점검 → 관리표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마음으로읽는타로]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행사	상품광고	50%	50%	-	대중매체(ppl)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가맹점모집 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공동 판촉	기획비용	제작비용 및 할인비용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개별 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월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액을 균분하여 산정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홍보물에 대하여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1조 [손해의 배상]

- ① 가맹점사업자는 [제40조 계약종료 후 조치]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 1일당 **금삼십만원(부가세 없음)**을 위약별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42조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삼천만원(부가세 없음)**을 위약별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물품 등의 조달과 관리]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부가세 없음)**을 위약별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가맹본부로부터 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양도한 경우 **금삼천만원(부가세 없음)**을 위약별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 상보험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2~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마음으로읽는타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및 종업원 관리 교육 ○키오스크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개별 또는 집단 교육	가맹점 오픈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프로그램 업데이트시 교육	실습교육 개별 또는 집단 강의	필요시	필수 교육
특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필요시	선택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마음으로읽는타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3일	1,1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개별 협의	실비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협의	실비	요청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마음으로읽는타로	경기도 화성시 상신하길로 298번길 7-23 KT 시네마 2, 2층 201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4년 5개월	

※ 2024년 3월 20일 개인사업자를 (주)아인컴퍼니로 포괄양수도 하였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3,566	

※ (주)아인컴퍼니로 포괄양도 되기 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입니다.

※ 첨부서류

[별첨1] 공급 기기 등의 내역

[별첨2]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판매상품명

[별첨3] 2021~2023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별첨 [1] : 공급 기기 등의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받는 판매상품명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오늘의운세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사랑(커플일 때)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사랑(솔로일 때)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상대방속마음(애정)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상대방속마음(친구)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상대방속마음(직장)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재회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직장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학교생활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금전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펫마음	5,000	본사 공문발송 등	
서양사주	15,000	본사 공문발송 등	

별첨 [3] : 2021~2023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